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자율안전확인 미인증 제품의 처리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율안전확인 미인증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첫째, 판매 목적이 아닌 증정이나 기증의 경우, 둘째, 다른 상품에 판매시에 무상으로 홍보용 번들제공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증정, 기증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에 의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공산품의 모델별로 안전성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법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1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질의하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증정, 기증 또는 홍보용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영업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7월1일부터 자율안전확인관련 KPS마크부착여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KPS관련 검사를 받아 기준에 합격하여 인증을 받았지만 이전에 이미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매장 재고중 마크 미부착 상품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통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원해서 마크 부착작업을 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마크 부착을 완벽히 처리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이 시작되면 이러한 상품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S인증 받은 제품일 경우, 위와 같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고 과태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인증 받은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KPS마크 미부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로 처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2005년 12월 개정·공포되었으며, 200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어,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등으로 구분하여, 금년 3월 24일부터 최초 출고 또는 통관 되는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제조(수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금년 7월부터는 유통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기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KPS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하겠습니다.